

애경산업(주) 협력사 행동규범

목적	- 애경산업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경산업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 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 규범의 내용은 UN 기업과인권 이행원칙(UNGPs),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였으며 협력사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애경산업의 준법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관련 프로세스	- 본 규범은 애경산업에 재화나 용역, 서비스 제공 등 거래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적용되며, 해당 협력사는 그 임직원과 거래선(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 애경산업은 거래계약 체결시에 본 규범을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망 구축 등 윤리경영을 위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https://www.aekyung.co.kr/report_guide)
ESG 현황 점검 및 실사	- 애경산업은 ESG 관련 리스크 점검 등 목적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점검 및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개선 계획을 수립 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애경산업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윤리경영	1.1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협력사는 애경산업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거래관계에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이해상충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반부패 법규 관련 컴플라이언스 확보를 위하여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한 거래, 광고 및 경쟁을 위한 기준 등 관할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며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부당히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윤리경영	1.3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 등 거래사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보관, 사용,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임직원 등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충이나 비윤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며 또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등 임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6 책임있는 원자재 구매 협력사는 원료, 부품 등이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환경적 이슈와 관련 없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 및 인권	2.1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협력사는 근로자의 채용, 승진, 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장애, 임신, 종교, 국적, 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2.2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협력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3 아동노동 및 임신부 보호 협력사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외 관련 법령에 따라 15세 미만이나 의무교육 연령을 넘기지 않은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또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 임신부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 및 인권	2.4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규 또는 국제표준 중에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며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2.5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정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정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내역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6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단결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대표가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 경영방침 관련 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3.1 산업 안전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개인 안전 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3.2 작업공간 안전 및 위생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다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3.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 등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3.5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자연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환경	4.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필수 환경 인허가(ex. 배출시설 등록 등) 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하면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물, 화석연료 등 천연자원 사용은 설비 공정 변경, 대체 자재 사용, 재활용 등 방법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며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최소화 또는 제거 되어야 합니다.
	4.3 유해물질 관리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은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4 제품 함유물질 규제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하며, 생산, 조달, 유통, 판매하는 원재료나 부품, 제품에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4.5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